

#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117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임
- 나.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, 종사자 교육, 외부자원 연계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개요
- 위탁사무명 :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지원단 운영
    -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등 운영지원 및 평가지원
    -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운영·지원
    - 지역 현장조사, 외부결연·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등
  - 위탁기간 : 2024. 1. 1.~2026.12.31.(3년간)
    - ※ 현수탁법인 :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
  - 위탁금 : 총327백만원(2023년)
 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##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### 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책임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### ○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, 종사자 교육, 운영 컨설팅 및 서울시와 현장의 중간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
- 이와 같은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책임)
  - 서울특별시장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  -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(적정)

※ 작성자 :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강선애(☎2133-5179 )